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가단512248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4. D

변론 종결2015. 12. 17.

판결 선고2016. 1. 28.

주 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339,122원과 그 중 86,613,362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6. 1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C 사이의 2013. 10.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C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0. 24. 접수 제1609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 B, C에 대하여 86,613,362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원고는 2006. 11. 7. "E" 대표인 피고 A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번호 F,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07. 11. 7.(그 후 2014. 10. 31.로 변경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85%)를 발급해 주어, 피고 A이 2006. 11. 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
-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2. 12. 1. 이후 연 12%이다)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 A이 압류·가압류·가처분을 당하거나, 회생절차 내지 파산절차를 신청하거나,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하거나, 조세공과를 체납하거나,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는 피고 A에게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다.

○ 피고 B,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그 후 피고 A은 2013. 10. 1. 국세체납 및 2014. 5. 9. 이래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다가 2014. 7. 1.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대출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2014. 9. 19. 중소기업은행에게 86,613,362원(= 원금 85,000,000원 + 이자 1,613,3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725,760원입니다.

○ 한편, 피고 A의 아들이자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2013. 10. 24. 피고 D과 사이에 자신의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60974호로 피고 D(피고 A의 여동생으로서 피고 C의 이모)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339,122원(= 대위변제금 86,613,362원 + 법적절차비용 725,760원)과 그 중 86,613,362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4. 9.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인 2015. 6. 15.까지는 원고 소정의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행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모인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것은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하여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D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A, B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것으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2-1,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피고 A에게 2011. 10. 11. 5,000,000원을, 2012. 3. 22. 500,000원을, 2012. 3. 30. 100,000원을, 피고 B에게 2011. 10. 10. 12,000,000원을, 2012. 5. 1. 500,000원을 각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계약의 피담보채권이 허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관한 것일 뿐이고, 달리 위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정영훈

별지